차미리사교양교육연구소규정

2022. 1. 12 제정2022. 4. 13 개정2024. 9. 4 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 1조(명칭 및 위치) 본 연구소는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교양대학 부설 차미리사교 양교육연구소(이하 '연구소'라 한다)라 하며 차미리사교양대학 내에 둔다.
- 제 2조(목적) 연구소는 대학 교양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교육과정에 반영,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또한 자생, 자립, 자각의 창학이념을 구현하는 여성교육, 핵심역량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,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연구·개발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(사업)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예시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교양교육 이념과 정책 개발
 - 2. 교양교육과정 · 교양 교과목 · 교양 비교과프로그램 개발
 - 3. 교양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
 - 4. 교양교육 평가 및 환류체계 연구
 - 5. 교양교육 연구자료 및 정보의 수집 · 정리
 - 6. 교양교육 관련 학술활동 및 인적교류와 협력
 - 7.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

제 2 장 구 성

- 제 4조(임원)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 - 1. 소장 : 1명
 - 2. 부소장 : 1명
- 제5조(소장) ① 소장은 차미리사교양대학 학장이 겸임한다.
 -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- 제 6조(부소장) ① 부소장은 차미리사교양대학 소속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 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2.4.13.>
 -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
- 제 7조(연구교수 및 객원연구원)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.
 - ② 연구교수 및 객원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제 8조(조교)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 3 장 위원회

- 제9조(운영위원회 등) ①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 - 1. 운영위원회
 - 2. 연구위원회
 - ② 각 호의 위원회는 연구소 사업 운영을 위한 분과를 둘 수 있다.<신설 2022.4.13., 개정 2024. 9. 4.>
 - ③ 분과에 분과장을 둘 수 있으며, 분과장은 소장이 임명한다.<신설 2022.4.13., 개정 2024. 9. 4.>
- 제10조(기능)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1.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24. 9. 4.>
 - 2. 연구소의 기본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 - 3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4.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 - ②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.<개정 2022.4.13.>
 - 1. 교양혁신분과, 소통역량분과, 융합사고력분과의 운영<신설 2022.4.13., 개정 2024. 9. 4.>
 - 2. 교양교육 이념 확립, 교양교육 발전계획, 교양교육 영역 개선, 교양교육 평가 및 환류 등과 관련된 연구<신설 2022.4.13.>
 - 3. 교양교육 포럼 개최, 학술대회 개최 등 대내외 교류 및 협력<신설 2022.4.13.>
 - 4. 단행본 또는 학술총서의 기획·출판<신설 2022.4.13.>
 - 5. 교양교육 관련 연구과제 수주<신설 2022.4.13.>
 - 6.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<신설 2022.4.13.>
- 제11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, 부소장, 연구위원장, 차미리사교양대학 교학부장, 글로벌커뮤니케이션센터장, 각 분과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.

-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.<개정 2022.4.13., 2024. 9. 4.>
- ② 연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차미리사교양대학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하되, 학술적 연구업적을 고려하여 교내외의 우수한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- ③ 각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.
- 제12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재 정

- 제13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- 1. 대학교의 보조금
 - 2.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 보조금
 - 3. 기타의 수입금
- 제14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- 제15조(연구관리비)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비 및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연구소의 운영 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.
- 제16조(해산)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7조(재산의 귀속)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된다.

부 칙<2022. 1. 12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4. 13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(제6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
부 칙<2024. 9. 4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